

수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5334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찬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0. 1. 7. 접수 제37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는 D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2012. 9. 26. E 주식회사, F 유한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로부터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을 전전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D은 원고에게 9,895,182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5. 7. 1. 확정되었다.

다. 한편 D의 부 I가 2019. 11. 2.경 사망하여 I의 상속인들인 피고(D의 모)와 J, K, D, L는 I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0. 1. 7. 접수 제378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D은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2019. 11. 2.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은 D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신용회복위원회의 D에 대한 채무조정에 따라 이 사건 양수금 채무는 1,853,054원 및 이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되었고, D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확정통지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더라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면책을 불허하는 의결을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그런데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연로한 피고의 여생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한 것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D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어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기 때문에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M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102,000,000원, 채무자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별 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평층레브

및 일부경사슬레브지붕 15층

지하1층 302.52㎡

지상1층 306.52㎡

2층 288.04㎡

3층 288.04㎡

4층 288.04㎡

5층 288.04㎡

6층 288.04㎡

7층 288.04㎡

8층 288.04㎡

9층 288.04㎡

10층 288.04㎡

11층 288.04㎡

12층 288.04㎡

13층 288.04㎡

14층 288.04㎡

15층 288.0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59.9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 228㎡

2. 동

소

대 18994㎡

3. 동

소

대 1㎡

4. 동

소

대 2㎡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19225분의 31.5458

끝.

